

12. 배당금·배분금 청구

㉠ 배당금등 청구(병합청구)

1. 원고가 피고회사 출자좌 5,000좌중 2,000좌에 대한 사원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5. 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① 정관소정의 사원총회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
그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.

② 사원총회의 승인, 결의없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
청구는 이유없다.(대법원 1983.3.22. 선고 81다343 판결)

㉡ 배당금반환 청구(기본형)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,486,112원 및 이에 대한 2015. 9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배당요구의 방식

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
면 되므로,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
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
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
볼 것이 아니다.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53547 판결)

☐ 이익배당금 청구(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)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,524,500원 및 이에 대한 2008. 10. 21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① 갑이 제정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②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

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(대법 1992.12.22. 선고 92다28822 판결)

☐ 이익배당금 청구(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)

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시 ○○동 194-40 대659.2㎡(이하 이 사건 공장대지라 한다)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. 11. 18.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63,326,805원 및 이중 31,716,423원에 대하여는 2009. 2. 21.자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, 나머지 31,610,382원에 대하여는 2010. 7. 19.자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동업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대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대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
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동업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대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그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(대법원 1991.4.26. 선고 90다8961 판결)

㉔ 배분금 청구(기본형,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)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4,700,000원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
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,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
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
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,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
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,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
 할 수 있다.(대법원 1994.4.26. 선고 93다32446 판결)